

회의록

안건	○ 보고 의안번호 제2026-재심-9-1-1호. 2026년 제8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회의 결과 의안번호 제2026-재심-9-1-2호. 2026년 제8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 심의 의안번호 제2026-재심-9-2-1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5-1-177) 의안번호 제2026-재심-9-2-2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3969) 의안번호 제2026-재심-9-2-3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10446) 의안번호 제2026-재심-9-2-4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2-1-24240) 의안번호 제2026-재심-9-2-5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3234) 의안번호 제2026-재심-9-2-6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11) 의안번호 제2026-재심-9-2-7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1-1-641) 의안번호 제2026-재심-9-2-8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9987) 의안번호 제2026-재심-9-2-9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3-1-8549) 의안번호 제2026-재심-9-2-10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코로나19-2022-1-14997)																																									
개최일시	2026년 8월 10일(월요일)																																									
장소	영상회의																																									
출석위원	재적위원 15인 중 부위원장 1인 포함 총 8인 출석																																									
회의내용	<table><tr><th>의안번호</th><th>결정사항</th><th>세부내용</th></tr><tr><td>제2026-재심-9-1-1호</td><td>원안 의결</td><td>-</td></tr><tr><td>제2026-재심-9-1-2호</td><td>원안 의결</td><td>-</td></tr><tr><td>제2026-재심-9-2-1호</td><td>일부 보상</td><td>붙임1 참조</td></tr><tr><td>제2026-재심-9-2-2호</td><td>보상</td><td>붙임2 참조</td></tr><tr><td>제2026-재심-9-2-3호</td><td>보상</td><td>붙임3 참조</td></tr><tr><td>제2026-재심-9-2-4호</td><td>보상</td><td>붙임4 참조</td></tr><tr><td>제2026-재심-9-2-5호</td><td>기각</td><td>붙임5 참조</td></tr><tr><td>제2026-재심-9-2-6호</td><td>보상</td><td>붙임6 참조</td></tr><tr><td>제2026-재심-9-2-7호</td><td>보상</td><td>붙임7 참조</td></tr><tr><td>제2026-재심-9-2-8호</td><td>기각</td><td>붙임8 참조</td></tr><tr><td>제2026-재심-9-2-9호</td><td>기각</td><td>붙임9 참조</td></tr><tr><td>제2026-재심-9-2-10호</td><td>보상</td><td>붙임10 참조</td></tr></table>			의안번호	결정사항	세부내용	제2026-재심-9-1-1호	원안 의결	-	제2026-재심-9-1-2호	원안 의결	-	제2026-재심-9-2-1호	일부 보상	붙임1 참조	제2026-재심-9-2-2호	보상	붙임2 참조	제2026-재심-9-2-3호	보상	붙임3 참조	제2026-재심-9-2-4호	보상	붙임4 참조	제2026-재심-9-2-5호	기각	붙임5 참조	제2026-재심-9-2-6호	보상	붙임6 참조	제2026-재심-9-2-7호	보상	붙임7 참조	제2026-재심-9-2-8호	기각	붙임8 참조	제2026-재심-9-2-9호	기각	붙임9 참조	제2026-재심-9-2-10호	보상	붙임10 참조
	의안번호	결정사항	세부내용																																							
	제2026-재심-9-1-1호	원안 의결	-																																							
	제2026-재심-9-1-2호	원안 의결	-																																							
	제2026-재심-9-2-1호	일부 보상	붙임1 참조																																							
	제2026-재심-9-2-2호	보상	붙임2 참조																																							
	제2026-재심-9-2-3호	보상	붙임3 참조																																							
	제2026-재심-9-2-4호	보상	붙임4 참조																																							
	제2026-재심-9-2-5호	기각	붙임5 참조																																							
	제2026-재심-9-2-6호	보상	붙임6 참조																																							
	제2026-재심-9-2-7호	보상	붙임7 참조																																							
	제2026-재심-9-2-8호	기각	붙임8 참조																																							
	제2026-재심-9-2-9호	기각	붙임9 참조																																							
	제2026-재심-9-2-10호	보상	붙임10 참조																																							

위 안건들에 관한 2026년도 제9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가. 피접종인 정보

- ○○○/여성/61세/아스트라제네카 1차/두드러기 등 피부질환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약 3일 후 엉덩이와 손목에 발진 및 가려움 증상이 발생한 점은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피부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 접종 후 발생한 두드러기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자문 의견을 고려할 때, 최초 발생 시점에서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이후 수개월 이상 지속된 두드러기 관련 진료도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입술 부종 등 이후 발생한 증상은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없으며, 고혈당증 및 대상포진 등 두드러기와 관련성이 없는 질환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일부 보상(두드러기 등 피부질환 : 보상, 그 외 질환 : 기각)

라. 기타

- 해당 없음

가. 피접종인 정보

- 000/남성/52세/화이자 2차/양측 하지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화이자 2차 접종 약 7일 후 양측 하지 가려움증 및 홍반성 반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부 조직검사에서 약물 유발 피부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특히 증상 발생 후 실제 의료기관 내원까지 약 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내원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상 발생 시점에 관한 진술을 배척하여 시간적 개연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증상 발생 시점에 관한 의무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당시 의료기관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피접종인의 진술을 인정
- 다만, 피부 증상이 발생한 이후 급성 위염 등으로 여러 차례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음에도 당시 피부 증상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피부과 진료는 접종 후 약 2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점에서 증상 발생 시점 및 시간적 개연성이 불분명하며, 또한 위염 등의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다른 약물에 의한 피부반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보상

라. 기타

- 해당 없음

가. 피접종인 정보

- ○○○/여성/33세/화이자 3차/두드러기, 혈관부종 등 피부질환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피접종인은 예방접종 전에도 간헐적인 두드러기 및 입술 부종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기존 두드러기가 악화되어 접종 다음 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접종 약 5개월 후 시행한 피부반응검사에서 코로나19 백신에 포함된 폴리에틸렌글리콜(PEG) 성분에 양성 반응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이 기존 두드러기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PEG 성분에 대한 검사 결과가 확인된 점을 근거로, 기존 질환의 새로운 발생인지 악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과 증상 악화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사례로 보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보상

라. 기타

- 해당 없음

가. 피접종인 정보

- ○○○/여성/20세/화이자 3차/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화이자 3차 접종 약 7시간 후 피부발진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후 수포성 병변으로 진행된 임상경과를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됨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이나, 국내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부 구간에서 발생 위험이 증가한 결과가 확인된 바 있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기전적·역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추정하고 보상하는 데 동의함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보상

라. 기타

- 해당 없음

가. 피접종인 정보

- ○○○/여성/71세/아스트라제네카 1차/면역혈소판감소증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55일 후 멍이 발생하고 이후 면역혈소판감소증으로 진단된 사례로, 기존에 논의된 6주(42일)의 위험기간을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더라도 55일까지 확대하여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적 개연성이 명확하지 않아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기존의 42일이라는 위험구간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인지 또는 연구 설계상 설정된 기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전 재심위원회에서 위험구간을 초과한 사례에 대해서도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여 보상한 선례가 있었음

다. 결정사항

- 위원간 의견 차이가 있어 서면으로 의결하기로 함
 - (서면 의견 종합) 피접종인에게 발생한 면역혈소판감소증은 관련 문헌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더라도 예방접종과 관련된다고 보기 위한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특별법에 따른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움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기각

라. 기타

- 해당 없음

가. 피접종인 정보

- 000/남성/57세/아스트라제네카 2차/면역혈소판감소증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접종 전 혈소판 수치가 정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1차 접종 약 2주 후부터 멍과 자반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2차 접종 다음 날 증상이 악화되어 혈소판 감소가 확인된 임상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 면역혈소판감소증의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면역혈소판감소증이 치료 이후에도 재발하거나 혈소판 감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자문 의견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치료를 포함하여 예방접종과 면역혈소판감소증과의 관련성을 추정하고 보상하는 데 동의함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보상

라. 기타

- 해당 없음

가. 피접종인 정보

- 000/남성/34세/아스트라제네카 1차/면역혈소판감소증, 자가면역성 용혈성빈혈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백신 접종 6일 이후 점상출혈 및 반점이 발생한 시점을 고려할 때 시간적 개연성이 명확하고, 피접종인이 37세로 비교적 젊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을 설명할 만한 다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 피접종인에게 비장비대와 빈혈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면역혈소판 감소증과 자가용혈성빈혈이 동반된 에반스증후군이 의심되며, 이는 면역혈소판감소증과 유사한 자가면역성 질환 중 하나로, 면역혈소판 감소증과 비슷한 기전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보상

라. 기타

- 해당 없음

가. 피접종인 정보

- ○○○/남성/81세/화이자 2차/면역혈소판감소증, 뇌경색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화이자(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례라는 점과, 예방접종 후 혈소판 감소가 확인되기까지 101일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 면역혈소판감소증 발생과의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후 발생한 뇌졸중 역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결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기각

라. 기타

- 해당 없음

가. 피접종인 정보

- ○○○/여성/63세/화이자 3차/면역혈소판감소증, 이명 등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면역혈소판감소증 발생 사례를 찾기 어렵고, 기왕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백신 플랫폼별 발생 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나 자연과학적·의학적인 인과관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회규범적 요소와 특별법의 입법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명은 접종 이전인 2009년 이미 진단받은 병력이 있고 주관적인 증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혈압 등 다른 기저질환의 치료를 위한 진료비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 결정사항

- 면역혈소판감소증에 대해 위원간 의견 차이가 있어 서면으로 의결하기로 함
 - (서면 의견 종합) 피접종인의 면역혈소판감소증은 시간적 개연성은 인정되나, 항응고제 복용력 및 항핵항체 양성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특별법에 따른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움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기각

라. 기타

○ 해당 없음

가. 피접종인 정보

- ○○○/남성/49세/모더나 1차/면역혈소판감소증

나.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

- 앞선 9번 안전과 같이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면역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한 사례로, 위원별 서면 의견 제출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

다. 결정사항

- 위원간 의견 차이가 있어 서면으로 의결하기로 함
 - (서면 의견 종합) 면역혈소판감소증 진단은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됨. mRNA 백신과 면역혈소판감소증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접종 전 혈소판 수치가 정상으로 확인되는 등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법에 따른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
 - 보상

라. 기타

- 해당 없음